

핸드볼 실업선수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시행 규칙은 핸드볼 실업선수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핸드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핸드볼 실업선수의 계약과 이적,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핸드볼코리아리그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한다)와 각 핸드볼실업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 실업선수(이하 "선수"라 한다)를 비롯하여 핸드볼코리아리그(이하 "HKL"이라 한다)를 포함한 실업선수가 참가하는 대회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

- ① 이 규칙은 구단의 모든 코칭스태프 및 선수에게 적용된다.
- ② 외국인 선수에 대해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은 국제핸드볼연맹(이하 "IHF"라 한다)의 규정과 협회 선수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선수 계약

제4조 (계약서)

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협회가 정한 실업핸드볼선수 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에 의한다.

제5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 ①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및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IHF 에이전트(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 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IHF 및 협회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및 연봉)

- ①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로 하며, 모든 계약은 최종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본급 연액(식비제외)은 최저 2400만원으로 한다. 또한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 ③ 신인선수 계약은 별도 규정(제4장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의거 체결한다.
- ④ 병무기간(군/경 입대)의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 한다.
- ⑤ 연봉 조정에 있어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구단과 선수는 조정위원회에 연봉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른다.
- ⑥ 최초 실업 입단 후 계약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선수에 한하여 연봉 조정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⑦ 제 6조에서 정한 연봉 및 계약기간의 미 준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선수는 그 즉시 계약 만료 선수로 공시하고 해당 구단에는 징계를 내린다. 징계의 범위는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계약 갱신 및 수정)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후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또는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발효)

구단과 선수 간의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협회가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9조 (특약 조항)

계약서의 특약조항은 계약과 관련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식 명칭과 서명)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구단은 공식 명칭과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준수 및 이행)

- ①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다음과 같은 구단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1) 구단의 공식훈련
 - 2) 구단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의 참가
 - 3) 구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 4) 구단이 소속된 협회의 행사
- ②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있어 구단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구단의 공식후원사가 아닌 기업 및 단체의 광고출연
 - 2) 구단의 공식 요청을 받지 아니한 경기 외적인 언론의 취재활동
 - 3) 기타 구단 및 선수의 상표권과 초상권과 관련된 대외활동
- ③ 상기①항 및 ②항에 대한 분쟁상황이 발생시 구단 또는 선수가 요청한 경우 또는 협회장 직권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

- ① 구단별 등록선수수는 16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 2명으로 한다.
- ②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로 하며,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협회 업무일까지)로 하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코칭스태프(감독, 코치 등)는 1월31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협회 업무일 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1) 등록된 자만이 공식경기에서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공식경기에 최소 2명 이상의 코칭스태프가 참가하여야 한다.
 - 2)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 ④ 모든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출전 대상경기 2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외국인 선수와 신인선수, 계약만료선수, 임의탈퇴 철회선수, 이적선수, 팀 보류선수, 임대선수, 임대복귀선수와 신생 구단 선수의 추가등록은 상시 가능하다.

제13조 병역법에 따른 복무 선수

-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에 병역법에 따라 복무 할 경우, 복무종료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복무 중인 소속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수 병역법에 따른 복무 시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에 대하여 보류선수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되지 않은 복무 선수는 제15조 계약만료 선수의 자격을 갖는다.
- ③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된 상기 ①항의 선수가 복무 종료 시 소속 구단은 복무 직전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제외)하여 전역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병역법에 따른 복무로 인하여 계약이 정지 된 기간과 복무종료 후 잔여 계약 기간이 상이 할 경우 제6조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단, 구단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 ① 구단은 최대 2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포함)는 최대 2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 ② 외국인 선수 계약과 고용에 대한 사항은 관련 IHF 규정과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③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 1) 국내구단에서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 ④ 외국인 선수의 경우 1명당 연봉의 상한액과 구단별 외국인 선수 연봉 총액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계약만료선수)

- ①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 조건 없이 만료되고, 구단과 선수가 합의 또는 구단에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경우,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공시되어 타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 ② 구단은 선수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해 10월 31일 까지 재계약 여부를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계약 의사가 없는 선수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협회 근무일 까지) 계약만료 선수로 협회에 공시하고 선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기한내 공시하지 않은 선수에 한하여 협회는 구단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단은 10월 31일 이후로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할 수 없다. 구단의 일방적인 재계약 의사 철회 시 구단은 선수와의 계약 만료일까지의 급여와 직전원천징수금액의 20%를 선수에게 지급한다.
- ④ 10월 31일 이후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구단은 즉시 협회에 계약 만료 선수로 공시 하여야 하며 공시 시 구단과 선수가 작성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 (웨이버선수)

- ① 웨이버선수는 구단이 소속선수와 계약의 해지를 원하거나 타 구단에 양도의사가 있어 선수의 승낙을 받아 그 명단을 본 회에 제출하여 웨이버선수로 공시된 선수를 말한다.
- ② 웨이버선수의 공시기간은 2주간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공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③ 웨이버선수는 당해 등록선수 정원에 포함된다.
- ④ 구단은 웨이버선수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직전원천징수금액의 30%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웨이버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제17조 (보류선수)

- ① 보류 선수는 팀 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구단의 보유권을 의미하며 해당 선수의 마지막 소속 구단이 그 권리를 갖는다.
- ② 각 구단별 보류선수 명단은 10명 이하(해외 이적, 군, 경 입대 포함)로 한다. 매년 11월 30일까지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류선수 명단은 상시 변경 등록할 수 있으나 보류명단에서 제외 한 선수는 다시 보류명단에 등록 할 수 없다. (해외 이적, 군, 경 입대로 인한 보류선수명단 등록 제외)
- ③ 보류선수는 양수구단에서 선수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0조 양수공시 절차에 따라 타 구단에 양도 할 수 있다.
- ④ 보류 선수는 선수 복귀 의사가 있을 경우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원 소속 구단에 복귀 요청을 할 수 있다. 원 소속 구단은 복귀 요청에 대하여 11월 10일까지 회신하여야 한다. 원 소속 구단과 선수가 복귀에 합의한 경우 제12조에 의거 상시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원 소속 구단에서 복귀를 거부 할 경우 보류 선수는 제15조 계약만료 선수의 자격을 갖는다. 또한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 역시 제 15조 계약만료 선수의 자격을 갖는다.

제18조 (임의탈퇴선수)

-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규칙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에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을 접수한 조정위원회는 구단과 선수의 의견 및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최종 판단을 내리며, 구단과 선수는 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 ④ 협회는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⑤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협회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협회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 ⑦ 임의탈퇴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 선수 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 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 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19조 (실격선수)

협회는 규칙 위반 또는 법적,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켜 핸드볼실업 선수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적당한 기간의 출장정지, 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의 제재를 가하며 실격선수로 공시한다. 구단은 실격선수로 공시된 선수에 한하여 1일당 연봉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신청 및 활동 제한)

- ① 구단이 타 구단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협회는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구단을 상대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21조 (타 직업 겸업)

선수는 소속 구단과 협의 후 구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제22조 (위반 처분)

규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구단(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제3장 자유계약선수(FA: Free Agency)제도

제23조 (FA선수 자격 취득)

자유계약선수(이하“FA선수”라 한다)라 함은 협회가 정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선수로서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를 말한다.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입단 후 매년 소속팀 전체 경기 수의 30% 이상 5년간 출전한 선수 중, 당해 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선수를 말한다.
-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 경기는 협회가 주최하는 공식 경기로 하며, 해당대회 참가신청 선수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서는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 ④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 1) 원 소속 구단은 선수와 합의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재계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구단과 선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원 소속 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본 규칙 제15조에 따른다.
 - 3)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 규칙 제30조(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따른다.

제24조 (권리 행사)

- ① 구단은 FA자격 대상 선수를 10월 15일까지 협회에 공시 하여야 한다.
기한 내 FA자격 대상 선수로 공시하지 않은 선수는 계약만료선수로 간주한다.
- ② FA 자격을 획득 한 선수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협회 근무일 까지) 협회에 FA자격 행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FA자격 행사 신청을 받은 협회는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 계약 FA선수도 같이 공시된다.

제25조 (교섭 기간)

- ① FA자격을 신청한 선수는 협회에 권리행사를 신청하고 공시가 되는 순간부터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전체 구단과의 입단교섭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자격 취득 선수를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한다.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된 선수와는 원 소속 구단만이 당해 시즌 동안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선수는 다음 연도 FA 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은 원 소속 구단에 있다.
- ③ 3년간 원 소속구단으로 복귀를 못하고 미계약 FA선수로 남을 경우 원 소속구단은 제17조에 의거 보류선수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15조에 의거 계약만료 선수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6조 (FA선수 영입 공시 절차)

- ① FA선수의 영입에 관하여 영입 구단은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협회 근무일 까지)원 소속구단 보상 합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FA영입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상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협회는 FA선수 영입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FA영입 승인을 공시하고 선수등록 시 선수등록을 승인한다. 협회에 영입 공시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선수등록을 승인 하지 않는다.
- ③ 당해연도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드래프트세칙 3항의 의무지명 미 준수 구단은 FA선수 영입을 제한한다.

제27조 (선수계약의 조건 및 조정 불청구)

- ① FA자격 선수와 구단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는 3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구단 및 FA자격 선수는 계약 협상에 있어 계약기간 및 연봉액수에 대한 조정을 협회에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제28조 (FA자격 재취득)

FA 선수가 3년 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 수의 30% 이상 출전하면 다시 FA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제29조 (보상 및 이적료 등)

- ① FA자격 취득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양수 구단은 원 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성별	실업선수 활동 년수	금액
여자	5년 이상 ~ 7년 미만	직전 연봉의 200%
	7년 이상 ~ 10년 미만	직전 연봉의 100%
	10년 이상	없음
남자	5년 이상 ~ 7년 미만	직전 연봉의 200%
	7년 이상 ~ 10년 미만	직전 연봉의 100%
	10년 이상	없음

- ※ 직전연봉은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서에 명기된 보장된 연봉과 선수가 계약기간에 받은 계약금을 연할 계산한 것으로 한다.
-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원 소속(양도) 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 소속(양도) 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양수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

- ① 이적료 없이 해외 구단에 입단한 FA 선수가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② 상기1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구단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소속구단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산출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성별	실업선수활동 년수	금액
여자	5년~8년	해외진출 직전 연봉의 200%
남자	5년~8년	
여자	8년 초과	해외진출 직전 연봉의 100%
남자	8년 초과	

- ③ 본 조항은 본 규칙 시행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제31조 (FA 선수의 양도 금지)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 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이후 1년 동안 FA 선수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제32조 (FA 선수의 영입 인원 제한)

타 구단에서 영입하는 FA 선수는 당해 연도에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사전교섭에 의한 제재)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규칙을 위반한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위반 구단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10년간 계약 금지
- 2) 위반 선수 : 원천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및 3년간 계약 정지

제4장 신인선수 선발제도

제34조 (선발 대상)

-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고졸(대졸) 예정자 또는 고교, 대학 재학 중이 아닌 만 17세 이상 자로서, 처음 실업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 ② 신인선수라 함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실업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 연도 첫 실업 입단 선수를 말한다.

제35조 (선발 방식)

- ① 실업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며, 지원자는 드래프트 신청서(협회양식)를 소정의 기일 안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드래프트 지명선발은 본 협회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한다.

③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확률제로** 진행한다.

확률 산정 방식은 직전 리그 순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최종순위	공 개수
8위	22개
7위	20개
6위	17개
5위	14개
4위	11개
3위	8개
2위	5개
1위	3개

- 1) 1라운드 지명은 추첨 결과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2) 2라운드 지명은 1라운드 지명의 역순으로 한다.
- 3) 3,4라운드 지명은 1,2라운드 지명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 4) 5,6라운드 지명은 3,4라운드 지명과 동일한 방식에 의한다.
- 5) 전년도 HKL 불참 팀은 선수지명에 있어 **가장 낮은 확률을 부여한다.**
- 6) 전년도 의무지명(2명) 미 준수 팀은 선수지명에 있어 **가장 낮은 확률을 부여**하며, 전년도 HKL 불참 팀 보다는 상위 **확률**을 갖는다.
- 7) 1, 2라운드 지명권 포기 구단은 지명권 행사를 포기한 다음라운드 최하순위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복수의 지명 포기 구단 발생 시 당해 드래프트 지명순위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 8) 라운드별 지명포기 구단이 발생 시 라운드별 8명의 선수가 지명될 때 까지 지명권을 행사한 구단에만 순서에 따라 지명권 행사 권리가 주어지며 8명이 채워지면 지명 라운드를 종료 한다.

제36조 (계약 시기)

① 구단과 신인선수 간의 계약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다음 연도 1월 말 까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신인선수 등록 기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체결 즉시 협회에 계약 사실(계약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드래프트제도)

드래프트제도는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선수 계약의 양도

제38조 (선수 계약의 양도)

-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이적)할 수 있다. 구단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13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 ② 선수는 원 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같거나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선수가 객관적으로 심히 불합리한 이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제39조 (선수의 임대 이적)

-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임대(임대이적) 할 수 있다. 구단이 임대 이적 선수 또는 임대 이적 복귀선수를 등록 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 ② 선수의 임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③ 선수는 원 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가 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선수가 객관적으로 심히 불합리한 이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협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④ 상기 ③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제40조 (양수 공시 절차)

- ① 구단이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 구단은 양도, 양수 협정서(또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선수의 임대에 관하여 임대, 임차 하고자 할 경우, 임차 구단은 선수 임대 협정서(또는 임대동의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협회는 양도, 양수 및 임대, 임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 또는 임차 구단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또는 임차 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하며, 협회에 양수 또는 임차 공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선수등록을 승인 하지 않는다.

제41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6장 보수 지급의 한계

제42조 (연봉과 그 지급 방법)

연봉은 제6조 ②항에 의하며, 지급방법은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43조 (금액 표시와 세금 징수 방법)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그 소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선수가 부담하되, 구단은 연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및 협회와 IHF의 규정
에 의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칙 및 필요에 의해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은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
한 일자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승인 2012. 3. 30.

개정 이사회 승인 2012. 9. 19.

개정 상임이사회 승인 2013. 10. 13.

개정 이사회 승인 2014. 6. 25.

개정 상임이사회 승인 2015. 7. 1.

개정 이사회 승인 2018. 10. 25.

개정 이사회 승인 2019. 5. 9.